

2026년도 제13회 특수지계약집배원 채용 공고

화성우체국 특수지(입파도)에서 근무할 특수지계약집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화성우체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근무지역	채용인원	담당업무
공무직 특수지계약집배원	국화리 내 입파도	1명	- 우편물 수집 및 배달 - 기타 부대업무

2. 근무 조건

○ 신 분 : 공무직 근로자(비공무원)

*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 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 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 수 : 시급 10,030원

- 수 당 : 가족수당, 근속수당, 명절수당, 특수지집배특별수당, 정액급식비 등
- 실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시출장여비 등
- 기 타 :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맞춤형복지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

- 근무시간 : (입과도) 주 5일(평일 월~금), 1일 3시간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휴 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 업무특성 :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일평균 40통 정도의 통상우편물 및 20kg 상당(최고 30kg)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 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원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지역제한 : 공고일 기준 특수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우편물 배달 후 당일 귀가 가능한 자

라. 차량 또는 이륜차에 의하여 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 소지자

※ 차량의 경우『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소지자

이륜차의 경우『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소지자

마.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성실한 자

바.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

사. 응시자격제한

-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자의 경우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자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른 청년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5. 시험 방법

채용분야 \ 시험단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특수지계약집배원	서류전형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서류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예비합격자 선발) 면접시험 차 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 합격자가 3개월 이내 계약해지 시 별도 시험 없이 합격자로 결정
- 라. 최종합격자 채용포기, 결격사유, 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7. 15. (수) ~ 2026. 7. 22. (수), 09:00~18:00까지

※ 단,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함

나. 접수장소 : 화성우체국(3층) 지원과 (☎ 031-8077-1957)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화성우체국) 또는 전자우편(tax40013310@korea.kr)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서식은 화성우체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gi/446>) 채용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 반드시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모집공고 : 2026.7.15.(수) ~ 2026.7.22.(수)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7.15.(수) ~ 2026.7.22.(수)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7.23.(목) 화성우체국 홈페이지 게시

라. 면접시험 : 2026.7.24.(금)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6.7.27.(월)예정 화성우체국 홈페이지 게시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나. 이력서 1부 【붙임2】

다.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라.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4】

마.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5】

바.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붙임6】

사.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 이력 표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아.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허발급 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야하며, 운전면허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자.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차.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화성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화성우체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화성우체국 방문신청,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화성우체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라. 특수지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공무원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마. 특수지계약집배원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 바. 접수마감 후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새로운 공고 없이 본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채용기준 미달 시 선발예정인원보다 채용인원을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우체국(☎ 031-8077-1957)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1】

응 시 원 서

(제26조제1항 관련)

본인은 화성우체국 시행 2026년 제12회 특수지계약집배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화성우체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종	특수지계약집배원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주민등록주소)	(우)			
전자우편		응시권역		
전 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응 시 표 ()채용시험	
응시직종	특수지계약집배원	성명	
20 년 월 일			
화성우체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화성우체국 우편물류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 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운전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합격자 공고는 화성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표준이력서 양식

(앞장)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경력()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주민등록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2. 교육사항					
직무관련 직업교육	교육과정명	주요내용		기관명	교육기간
3. 근무 경력사항 (지원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 기입)					
근무기간	구체적 업종	직위/역할	담당업무	비고	
4. 운전 및 정보화 관련 자격사항 (채용 자격요건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5. 정보화 등 자격사항 (채용 우대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자격분류 :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민간공인'으로 기재

(뒷장)

6. 직무관련 기타 활동			
활동구분	소속조직/ 활동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7. 특기사항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8. 기타 우대사항		
구분	내용	해당여부
지역인재		☐
기능인재(고졸인재)		☐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9. 운전경력사항 안내	
※채용이 확정된 경우 운전경력사항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전사고, 법규위반 사항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운전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1.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향후 위 기재 사항 중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누락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격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일자:	지 원 자: (인)

※ 본인 자필로 작성하며, 기재된 사항이 합격자 발표 이후 계약서 작성 시 제출된 자료와 대사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거나 허위 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3】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종	특수지계약집배원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특수지계약집배원

지원 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본인의 장·단점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만일 우정사업 종사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정보, 민감정보(사상, 신념(종교) 등)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기재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 . . .

작성 자 :

(서명 또는 印)

【붙임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응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주택, 사무실), Email주소, 운전면허, 운전경력,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장애여부, 취업보호대상자여부, 자기소개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입사지원 서비스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이용 : 성명, 생년월일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교육사항, 근무경력사항, 자격사항, 직무관련 기타 활동, 자격증 등 ④ 채용시 우대를 위해 이용 : 장애인 구분, 수급대상자 구분 등 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당사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정보, 수급자 정보
민감정보 의 수집 및 이용목적	채용 및 채용관리
민감정보 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채용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 종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이름 : (서명 또는 印)

화성우체국장 귀하

※ 응시자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정채용확인서

본인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근무 경력 :
2. 1번에 답변한 기관에 취업한 경로 :
3.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근무 직원(퇴직자 포함) 중 친인척 관계
-
4.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 재직하였던 친인척 관계 직원이 있다며,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및 임용 취소,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동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화성우체국장 귀중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열람하였으며, 조회 결과 채용공고
혹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에 위배되는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 및 근로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_____(서명)

※ (범죄경력 자료 조회·열람 방법) 본인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후 확인 가능

※※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에 위반하여 계약
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붙임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화성우체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